

제 호

최 고 장

성 명		생 년 월 일	
주 소		세대주의 성명	
최고내용	()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, 년 월 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주민등록, 등록사항의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: 문의전화:)

년 월 일

읍·면·동장 인

.....

제 호

최 고 장 수 령 증

성 명	외 명		생 년 월 일	
주 소			세대주의 성명	
최고내용	수령자	(서명 또는 인)	수령일	
비 고				